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승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904 발의연월일: 2020. 7. 14.

발 의 자:김승남·맹성규·조오섭

주철현 · 윤재갑 · 홍성국

안규백 · 황운하 · 서동용

심상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중앙회는 2015년부터 회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해오고 있지만, 위탁선거법 상 '임의위탁' 대상이어서 농협, 수협 등과같은 '의무위탁' 대상에게 적용되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제한 및 벌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.

예컨대 기부행위, 선거일 후 답례, 호별 방문, 매수 및 이해유도, 허위사실 공표, 후보자 비방 등의 행위가 선거에서 발생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한하거나 처벌할 수 없음.

이에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농협중앙회와 수 협중앙회처럼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위탁하여 향후 중기중앙회장 선거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3조제1 호가목).

법률 제 호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1호가목 중 "중앙회 및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"을 "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, 사업조합,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"로 한다.

제3조제1호나목 중 "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, 「새마을금고법」"을 "「새마을금고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3조(정의) (생략) 제3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(생략) 1. (현행과 같음) 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. 「수산업 가. 「농업협동조합법」. 「수산업 협동조합법 | 에 따른 조합과 | 협동조합법 | 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「산림조합법」에 중앙회, 「산림조합법」에 따 따른 조합 른 조합 및 「중소기업협동 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중 앙회와 전국을 업무 구역으 로 하여서 설립되는 조합, 사 업조합, 업종의 명칭을 붙인 연합회 나.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 나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 른 중소기업중앙회, 「새마을 고와 중앙회 및 「도시 및 주 금고법」에 따른 금고와 중앙 거환경정비법」에 따른 조합 회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비법」에 따른 조합과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다.~라. (생략) 다.~라. (현행과 같음) 2.~8. (생략) 2.~8. (현행과 같음)